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4
----------	-----

2022. 1. 26.(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월 19일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거나 인용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중복내용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20조)
 -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중복표현 정리
 - 행정용어 순화(선급 → 미리 지급, 이식증대 → 이자증대)
- 관련 법령 및 조례 명칭변경 (안 제5조제3항, 제20조제4항)
 - 「공사채등록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공채 상환 시 만기후 이자 적용금리 명시 (안 제10조제3항)
 - 공채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이자지급 시 적용금리 명시
- 시·군 용자 시 용자대상 명확화 (안 제15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
- 기금 상환 연체 시 적용 이율 명확화 (안 제19조제1항)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인용 법·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문구의 정비를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시하여 조례 내용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임.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인용 범명을 현행 「공사채등록법」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으로,
 - 이는 「공사채등록법」이 2019년 9월 16일자로 폐지됨에 따른 것임.

- 안 제10조제3항은, 공채 상환개시일(5년 거치 후 일시상환)부터 청구일 전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 지급할 경우, 이자율을 도지사로부터 공채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 공채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까지의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상 불분명성을 해소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5조제2항은,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과 관련해 시·군에 용자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토록 명시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는 지방채(차입금)에 해당되는 바,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합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안 제19조제1항은, 융자금의 상환 연체 시 연체대출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현행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로 규정된 것을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로 개정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는 연체대출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불명확성으로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기금 상환 연체 시 적용 이자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과 관련해, 다음날 납입하도록 한 규정이 현행 공휴일이었던 것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함.
 -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이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 제20조제4항에서는, 인용조례명을 개정한 것으로,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2월31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례명을 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그 밖에 안 제6조제3항 및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
 - (현행) “선급한다” → (개정) “미리 지급한다”
 - (현행) “이식증대” → (개정): “이자증대”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인용 법·조례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문구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석이 모호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되거나 인용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복내용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20조)
 -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중복표현 정리
 - 행정용어 순화(선급 → 미리 지급, 이식증대 → 이자증대)
- 관련 법령 및 조례 명칭변경 (안 제5조제3항, 제20조제4항)
 - 「공사채등록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공채 상환 시 만기후 이자 적용금리 명시 (안 제10조제3항)
 - 공채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이자지급 시 적용금리 명시
- 시·군 융자 시 융자대상 명확화 (안 제15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
- 기금 상환 연체 시 적용 이율 명확화 (안 제19조제1항)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 위탁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사채등록법」”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선급한다”를 “미리 지급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위탁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그 다음날”을 “다음 근무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이식증대”를 “이자증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기금운영 심의)”를 “(기금운용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운영”을 “기금운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u>----- ----- -----.</p>
<p>제2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p> <p>② <u>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u></p>	<p><삭 제></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p>제4조(기금의 재원) ① <u>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p>
<p>제5조(공채의 발행) ① ~ ② (생략)</p>	<p>제5조(공채의 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채권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 ② (생략)

③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한다.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 ② (생략)

<신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③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조(채권의 발행기간 및 이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미리 지급한다.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채권매입자에게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에 용
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9조(용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용
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
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
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
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
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용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 위탁금
융기관-----
-----.

②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
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
음 근무일-----
-----.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 ②
(생 략)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
대한 높여야 한다.

③ ----- 이자증대-----

-----.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제24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4조(기금운용 심의) ----- 기금운용

관련법령 발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식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다. 국채

라. 지방채

마. ~ 거. (생략)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